

●문화재청고시 제2023-4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80조의7제2항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에 따라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돌봄인력 역량 강화 등 돌봄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운영을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1월 19일

문화재청장

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

1. 위탁하는 자 : 문화재청

2. 위탁받는 자

기 관 명	대 표 자	소 재 지
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	김 창 준	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해이리로 12
(사)한국문화재돌봄협회	진 병 길	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, 2층

3. 위탁업무

기 관 명	위탁업무의 내용	위탁기간
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·회계 실무 ○ 기타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	별도 해지시까지
(사)한국문화재 돌봄협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 ○ 문화재의 일상적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○ 기타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	2023.12.31.

4. 재검토기한 : 문화재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(매 1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